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6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의자 : 김현정 · 강준현 · 김문수

박정현 · 송옥주 · 양부남

이수진 · 차지호 · 최혁진

황명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

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5의3.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

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 또는 제5호의3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u>&lt;신 설&gt;</u></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          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          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u>  <u>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u></p>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  
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으  
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  
소득

<신 설>

5의3.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  
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법인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  
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  
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

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  
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  
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  
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  
의2 및 제5호의3-----  
-----  
-----  
-----

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7. ~ 9. (생략)

#### ④ (생 략)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  
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  
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 ⑥ (생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생략)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생 략)

### 〈신 설〉

7.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 --

## ⑥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 또  
는 제5호의3에 따른 배당



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 -----. ② (현행과 같음)
---	--